

## 어 선 세 무 행 정 (IV)

수협중앙회 조사부

차 장 고 석 환

## — 목 차 —

1. 어선의 취득과 취득세·등록세
2. 어선의 건조와 세금
3. 어선에 대한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 —어선에 대한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 1. 어선에 대한 재산세

## 가. 어선소유와 재산세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세를 매년 빠짐없이 징수하여 잡니다. 재산세란 용어는 조세의 성질을 분류하는 학문적용어가 아닌 지방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세목 중의 하나입니다. 재산세의 두드러진 성격은 재산소유자가 토지나 건물·광구 또는 선박 등을 소유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세되는 수익세적 성격과 재산에 대하여는 엄격히 과세한다는 대물세적 성격을 함께 지닌 세금입니다. 수익세(收益稅)라 함은 과세물건에 의한 조세분류의 일종으로서 개개의 사용·수익 활동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반대되는 조세의 분류로는 소비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대물세라 함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사람에 두느냐 물건에 두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조세의 일종으로서 담세자의 개별적인 주관적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객관적인 표준에 의해서만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반대되는 조세의 분류로는 인두세(人頭稅), 소득세, 독신세(獨身稅) 등 인세(人稅)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1961년까지는 국세(國稅)의 일종인

지세(地稅) 또는 가옥세(家屋稅)나 선세(船稅) 등의 세목으로 부과되어 오다가 1962년 1월부터 지방세로 이관되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61년까지 선박에 대하여는 선세로 과세되어 오다가 1962년부터는 재산세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도지사가 아닌 시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기타시장을 포함한다). 군수가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처럼 시장·군수가 과세권자인 것을 지방세법에서는 시·군세(市·郡稅)라 하며 이와 반대로 도지사가 과세권자인 세금에 대해서는 도세(현재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가 있음)라고 합니다.

## 나. 재산세 과세대상인 어선의 범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선(汽船), 전마선(傳馬船)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은 시·군내에서 선적항 또는 정계장(定繫場)을 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적항이나 정계장이 있어야하므로 실수요자가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즉 선박건조회사 또는 선박판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선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다. 어선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각 과세대상별로 납기개시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률이나 부칙경과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는 한 각 사업년도 납기개시일 현재에 시행되는 규정에 의하여 납기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당해년도

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과세할 때 그의 과세시기와는 하등 상관없이 오직 취득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상황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선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 역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즉 어선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시·군청에 비치된 선박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선의 소유권 등 권리가 양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동 권리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실지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박과 세대장에는 종전의 선주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후 어선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이 변동됨으로써 실제의 선주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즉 당해년도 5월 16일 현재 실제의 선주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도·시·군·지방자치단체 기타 특수법인으로 부터 매수한 어선의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買收契約者)가 어선에 관한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어선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납부계산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은 납기개시일 현재의 재산가액입니다. 어선의 경우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선질별(船質別)·용도별·톤수별·건조년도별·기관(機關)의 종류에 따라 동력장비의 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1톤당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80톤 어선의 톤당가액이 5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액은 4천 8백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어선의 재산세 납부계산의 기본이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본단위는 선박의 톤수입니다. 따라서 톤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이를 톤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79.5톤은 80톤으로 계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선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고급선박에 중과하는 재산세율을 적용치 않습니다. 따라서 어선에 대한 재산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선과세표준액(총톤수×톤당 고시가액)의 1,000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4천 8백만원으로 과세표준액이 결정된 어선에 대한 재산세는 14만 4천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재산세외에 방위세 등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어선에 관한 재산세에 대한 방위세는 재산세액의 20%, 그러니까 앞의 경우에는 14만 4천원의 20%인 2만 8천 8백  $(144,000 \times \frac{20}{100} = 28,800)$ 을 방위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시에는 방위세이외에도 다시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선의 경우에는 이를 들다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일부 큰 도시의 어항에 있는 어선들은 재산세 납부시에는 방위세는 물론 소방공동시설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선의 과세표준액이 12만원 이하인 때에는 세법상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의 12만원 이상 여부의 기준은 어선의 1척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세액이 300원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小額不徵收)라 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됩니다.

**마. 재산세의 납부**

(1) 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납기

지방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정기분은 다시 건축물, 선박 등과 토지로 양분하여 건축물·선박분의 재산세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분의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납부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이외의 재산세납부의 경우 즉 과세누락, 착오과세등 사유로 정기분과 세 이후에도 수시로 과세하는 수시분의 경우에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임의로 납부기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2) 고지서 발부시기

재산세의 납부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어선소유자에게 발부되어야 하며 동 고지서에는 과세물건별 즉 어선별로 구분하여 다음 열거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과세대상물건
- ② 과세표준액
- ③ 세 액
- ④ 부과근거법령

- ⑤ 채납에 대한 조치
- ⑥ 구제방법(의의가 있을 때 재조사청구요령)
- ⑦ 기타 필요한 사항
- (3) 납부요령

재산세의 납부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부합니다. 보통징수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작성해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 어선의 소유권변동과 신고의무

어선의 재산세납세의무자는 다음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어선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1) 어선을 취득한 때
- (2) 어선을 매도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 (3) 외국에서 사용하던 어선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 (4) 비과세 해당어선이 과세대상 어선으로 된 때

이 경우 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시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定繫場), 용도, 톤수, 취득가액,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설명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를 근거로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을 추징하는 일은 없으나, 중전 선주명의로 과세대장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어 다른사람 명의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거나 멸실된 어선에 대하여 멸실신고가 없기 때문에 멸실후에도 계속해서 재산세고지서가 발부받음으로써 조세마찰 등 반감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선주 상호간의 시비발생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발생은 신고 등을 함으로써 사전에 해소시켜야 하겠읍니다.

사. 어선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 (1) 비과세

어선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는 극히 드문 것으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본선(本船)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에 공하는 선박
- ②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으로서의 어선
- (2) 감 면

어선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역시 드문 경우로서 현행법상 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시장, 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군의회의 의결(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받아 처리함이 원칙이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시킬 수도 있습니다.
- ② 재산세가 감면되는 일선수협 및 법인어촌계의 고유업무용 어선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감면하여 줍니다.

2. 어선의 임대와 종합소득세

가. 어선임대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자동차와 증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소득은 원래 종합소득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부동산소득)

- ① 부동산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기재생략)
  - 2. 등기, 등록된 선박, 항공기, 자동차와 증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3. (이하 기재생략)
- ② 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이하 기재생략)

따라서 어선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얻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 「어선대여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어선」 즉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선박을 말하며 동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과 단주(端舟) 또는 노도(櫓櫃)만으로 운전하는 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추진기를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은 소득세법상 선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선박법 제6조(등기와 등록)

-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등기를 한 다음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비치한 선박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운관청은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선박법 제20조(적용의 예외) 제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과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나용선계약(裸傭船契約)에 의하여 선박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합니다. 여기서 나용선계약이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의 임대(임대)에 있어 선체만을 임대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여기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 어선임대소득의 계산

어선임대에 따른 부동산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left( \begin{array}{l} \text{어선임대} \\ \text{총수입금액}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필요} \\ \text{경비} \end{array} \right) = \text{부동산소득금액}$$

(1) 어선임대총수입금액의 계산

어선임대총수입금액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세금(先貰金)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년도

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나)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left( \begin{array}{l} \text{보증금·전세금 또는} \\ \text{이와 유사한 금액} \end{array} \right) \times \left( \begin{array}{l} \text{1년만기정기} \\ \text{예금이자율} \end{array} \right)$$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2) 어선임대소득금액의 계산

(가) 어선임대총수입금액에서 어선임대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임대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라 함은 사용인의 급여, 당해 어선에 대한 비용, 공과금, 보험료, 감가상각비, 기타 지급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 그러나 장부가 전혀 없거나 장부는 있더라도 증빙이 불충분함으로써 어선임대에 따른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left( \begin{array}{l} \text{어선임대} \\ \text{총수입금액}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어선임대소득표준율}}{100} = \text{소득금액}$$

라. 어선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계산

(1) 어선소유자가 어선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bullet \text{어선임대소득금액(부동산 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가족공제)} = \text{과세표준}$$

$$\bullet \text{과세표준} \times \left( \begin{array}{l} \text{소득세법 제70조} \\ \text{제1항 세율} \end{array} \right) = \text{종합소득세}$$

(2) 그러나 어선소유자가 어선임대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bullet \text{어선임대소득금액(부동산 소득금액)} + \text{다른 종합소득금액(예: 수산물판매 등 사업소득금액} + \text{배당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

$$\bullet \text{종합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가족공제)} = \text{과세표준}$$

$$\bullet \text{과세표준} \times \left( \begin{array}{l} \text{소득세법 제70조} \\ \text{제1항 세율} \end{array} \right) = \text{종합소득세}$$

마. 신고 납부

(1) 신고 납부기한: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신고·납부장소: 주소지관할세무서